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직종) 대체인력 채용공고

2026학년도 4차 전주자연초등학교 교육장임용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직종]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전주자연초등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형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조리실무사)	1	- 급식 조리 - 급식소 위생관리 - 기타 학교장이 따로 지정하는 업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방학 중 비상시 근무)

2

신분 및 근무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 대체 노동자는 계약 중이라도 원 노동자가 복직하거나 원 노동자 퇴직에 따른 무기계약직 노동자 발령 시 계약 종료

나. 계약기간: 2026. 11. 11. ~ 2027. 1. 5.(1개월 26일)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방학 중 비상시근로 직종

라. 보 수: 월급제(기본급 금2,066,000원)

마. 각종수당: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에 의거 지급

바. 후생복지: 4대보험가입(개인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하며 개인소득에서 공제)

가.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나. 성별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제한: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 완주군**으로 되어있는 자(동기간 중 주민등록주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합격을 취소함)

마.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구.보건증) 적합판정**을 받고 **그 판정이 노동관계 시작일 기준 유효한 자**

바. 응시 결격사유(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검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대체 노동자는 계약 중이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가 종료 됨

4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2.(월) ~ 2026. 11. 3.(화) 16:00까지

다.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다. 제출방법

1) 제출장소: 전주자연초등학교 행정실(1층)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신분증 지참)

3) 해당일(해당시간) 이후 도착분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서류접수 및 서류전형	응시지원서	· 붙임 1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2026.10.29.) 이후 발급 ·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자격증 사본 “해당할 경우 제출”	· 원본 지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조리사 이상의 자격증 · 공고일(2026.10.29.) 현재 유효기간에 있을 것
	경력증명서 “해당할 경우 제출”	· 원본 제출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근무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주40시간 이상, 공고일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
	공정채용확인서	· 붙임 2
최종 합격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3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최근 2년 이내)	· 원본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원본 제출
	겸업확인서	· 해당자 노동관계 시작 2일 이내 제출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 붙임 5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이수증	· 노동시작 전 이수증 제출

5

시험방법 및 일시

가. 1차: 서류심사(40점)

- 1) 심사대상: 응시원서 제출자
- 2) 심사내용: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경력 요건 적격 여·부 및 서류 평가
- 3) 선발인원: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4) 서류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집단급식시설 경력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급식관련 자격등급 점수가 높은 자

* 집단급식시설(식품위생법 제2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집단 급식 시설: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학교: 실제 근무지가 국·공·사립학교(유·초·중·고·특수·대학)
- 기타기관: 실제 근무지가 학교 이외 집단 급식 시설의 경력(어린이집 등)
- 경력제외: 집단 급식 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조리 종사원 이외의 경력(홀 써빙 등)

* 급식 관련 자격증: 한식, 양식, 중식, 일식 4종만 해당

- 5)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1. 4.(수) 14:00 이후,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심사(60점)

- 1)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2) 면접방법: 개별면접, 면접기준 5개 항목(전문성/적극성/소명의식/성실성/논리성)에 대해 개인별 10분 이내로 실시
- 3) 면접일시: 2026. 11. 5.(목) 10:00(※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도착)
- 4) 면접장소: 우리학교 1층 회의실

6

최종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점수와 2차 시험(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기준: 서류전형 점수(40점)와 면접심사 점수(60점)를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나.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 1) 1순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2) 2순위: 서류심사에서 집단급식시설 경력점수가 높은 자
- 3) 3순위: 서류심사에서 급식관련 자격증 소지 점수가 높은 자
- 4) 4순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다.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5.(목) 14:00 이후, 학교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최종 합격자의 합격취소

- 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
- 1)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3)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8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자격 미소지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30일 이내 반환을 청구 **붙임 6**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다. 공고된 채용 관련 일정은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라. 문의처: 전주자연초등학교 행정실(☎ 063-717-2301)

- 붙임 1. 응시지원서 1부.
2. 공정채용확인서 1부.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1부.
4. 겸업확인서 1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응시지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접수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생년월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2. 응시자격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자격증 사항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p>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교육공무원 조리실무사 직종 채용 자료로 활용</p> <p>②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경력사항, 자격 소지사항,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최종합격자에 한함)</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응시원서 접수 후 30일 보관</p> <p>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직종) 응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p>				
<p>※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p> <p>※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서명 또는 인)</p>				

응시지원서 작성요령

1. 응시지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 응시번호: 빈칸
 - 주소 및 연락처: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긴급 연락처 기재
 - 경력사항
 - 관련 분야 행정기관 근무경력 기재
 -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 자격사항
 -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사항 기재
 - 자격증 제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

공정채용 확인서

전주자연초등학교장은 우리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1. 본인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성명 (본인)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기타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자연초등학교장 귀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전주자연초등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2. 학교명 : 전주자연초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서명 또는 인)

검 입 확 인 서

소 속 :

직 종 :

성 명 :

위 본인은 전주자연초등학교 ()직종에 응시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1. 근무기관	
2. 직종	
3. 근무기간	
4. 담당업무	

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 검입하고 있는 업무를 위 확인서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로 인정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전주자연초등학교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라북도교육감과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결격사유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전주자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채용공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 용 서 류 반 환 청 구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자연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